

선거홍보와 저작권

韓勝憲

한국저작권연구소장·변호사

두 차례의 큰 선거에서 나타난 홍보전의 변화는 그야말로 눈부신 바가 있었다. 그 방 법과 열기가 너무나 지나쳐서, 선거법을 제대로 지킨 후보자는 거의 없을 정도였다. 그리고 그에 못지 않게 저작권법 위반 현상이 범람한 것도 사실이다.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만 알리는 자기피알과정에서 남의 저작물을 무단이용하는 반칙이 성행했다.

대부분의 저작권자들은 자기 저작물이 어느 후보에 의하여 어떻게 이용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거나 알고나서도 눈감아 주었지만,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항의를 한 사례도 있다.

필자가 알기에도, 신문·잡지에 실린 기사를 대량 복사하여 뿐만 아니라 후보자들의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문제삼을 수 있지 않느냐고 흥분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선거홍보물에 신문·잡지에 난 시사만화를 무단 전재하였다고 해서 후보자에게 사과와 배상을 요구한 만화가들도 있었다.

모두가 이왕에 나온 간행물을 무단 복사한 경우이지만, 그밖에도 사진·편지 등을 아전 인수격으로 써먹는 ‘지혜’도 많이 발휘되었다.

먼저 신문·잡지에 실린 기사를 무단으로 대량 복제한 경우를 살펴보자.

여기에는 후보자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상대방 경쟁후보에 불리한 보도기사, 논평, 인터뷰 또는 대담기사 등을 잘라내어 복사해서 뿐만 아니라 기자의 시각과 문제에 대해서 구성되거나 내용에 염연한 저작물이다.

저작권법에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으나(저작권법 제7조 제5호) 이

지난 선거전에서는 저작권법 위반현상이 전에 없이 범람했다. 신문·잡지에 실린 보도기사나 논평, 인터뷰, 대담기사 등을 무단으로 잘라내어 복사해서 뿐만 아니라 것은 명백히 저작권의 침해다.

것은 구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잡보’, 즉 인사·동정·왕래·사망 등에 관한 짧막한 기사만을 가리키는 데 불과하며, 넓게 잡더라도 이를비 6하원칙(5W 1H)만 충족시키는 정도의 단순한 기사를 제외한 보통의 기사는 거의 기자의 개성있는 관찰과 표현력이 작용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시사보도라고 볼 수 없다.

사설·논설·칼럼 등은 더욱이나 무단이용이 금지되는 창작적 표현의 저작물이다. 따라서 외부 필자의 기명저작물일 경우에는 그 필자 개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밖에 사내에서 작성된 직무상 저작물(법적으로는 ‘단체명의 저작물’ 또는 ‘법인 저작물’)이면, 그 신문사나 잡지사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

인터뷰 기사일 경우는 인터뷰어의 질문과 유도에 따라서 응답자의 말이 나오게 되고, 그 내용을 정리 또는 요약하여 문장화하는 데도 인터뷰어의 노력이 투입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 문장(인터뷰 기사)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여기에는 인터뷰응답자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문장의 끝머리에 더러 ‘文責記者’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인터뷰 내용의 문장화에 대한 책임이 기자에게 있다는 뜻일 뿐이라고 한다.

이와는 달리 질문자의 질문과 유도에 따라 응답자의 말이 口述되어 나오는 점을 중시하

여 두 사람의 공동저작물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뒤의 견해에 따른다면, 후보자 자신이 인터뷰응답자였을 경우라 하더라도 질문자의 승락을 받아야 그 문장을 이용할 수가 있다.

‘對談’의 경우에는 쌍방이 서로 자신의 생각을 대등하게 주고받으며 때로는 토론과 논쟁을 벌이는 형식을 취하므로 통상의 인터뷰와는 다르다. 즉,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저작권법 제2조 제13호가 정하는 ‘공동저작물’)으로 보아 쌍방의 합의가 없이 단독으로 이용할 수가 없다(같은 법 제45조 제1항). 만일 각자의 발언부분을 분리하여 이용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를바 ‘결합저작물’로 보아서 자기 발언부분을 분리시켜 단독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후보자가 자신의 평판을 높이기 위해서 유명인사의 이름으로 된 인물평을 홍보물에 이용하는 수도 있다. 종전에 나온 저서의 서평에 들어 있는 문장이나 그밖의 다른 기회에 말이나 글로써 칭찬받은 내용을 옮겨다 쓰는 것이 보통인데, 특히 자기가 받은 편지 내용을 인용 내지 전재할 때에는 심각한 문제가 따른다.

편지의 소유권은 수신인에게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발신인의 저작물이므로 그 저작권은 발신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다. 그러므로 그 편지를 수신인의 필요에 따라 단독으로 공표하는 것은 발신인이 갖는 저작자인격권(그중에서 공표권)의 침해가 된다. 개인 사이의 편지는 수신인만 읽어 보는 것을 전제로 하여 써어지는 것이 통례이므로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공표권을 넘겨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반대로 편지의 발신인이 자기의 편지를 인쇄물로 만들어 공표하는 행위는 저작자로서의 공표권 행사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처럼 생각되기 쉽다.

그러나 개인 사이의 편지(私信)에는 두 사람 사이의 내밀한 사연이 포함되는 수가 많으므로, 만일 수신인의 동의도 없이 발신인이 일반적으로 편지 내용을 공표해버린다면 수신인의 프라이버시, 명예, 그밖의 인격권을 침해할 염려가 많다. 편지 속의 칭찬도 비공개적이거나 인사치레라는 점을 전제로 한 의사표시일 수도 있다. 서양에서는 이런 경우에 수신인의 승인이 없으면 발신인의 공표권이 제약을 받도록 하는 입법 초안이 나온 적도 있다(1932년의 독일 저작권법 초안).

아울든 남의 저작물을 기막히게 이용하여 자기 誇示를 하는 지략은 좋으나, 저작권 같은 남의 권리의 생각조차 못하는 선량 후보들이 많다는 것은 안타깝다. 설령 저작권을 가진 측의 동의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글의 내용이 허위하거나 남의 명예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것이면 그것을 이용한 사람도 함께 법적 책임을 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선거법과 저작권법을 열심히 위반한 덕분으로 금배지를 붙인 선량들이 입법부에 만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실로 개탄할 만한 일이다.

生醫倫理學이란?

T. 샤논, J. 디지아코모 지음
황경식, 김상득 옮김

금세기에 이루어진 생명과학 및 의료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생명과 죽음에 관한 복잡하고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을 제기했고, 따라서 그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생의윤리학의 관심을 증대시켰다. 이 책은 생의윤리학 분야에서 논의되는 문제들에 대한 입문서로서 써어졌는데, 다루고 있는 내용에는 임신중절, 죽음의 정의, 암치료, 유전공학, 장기이식, 행태교정, 환자의 권리 등이 있다.

• 192면 / 3,000원

철학서적 **서광사** 동대문구 용두2동 119-46
전화 924-6161~5

온라인 컴퓨터 조판시스템 가동

- 레자프린트 교정
- 입력에서 출력까지 즉시 처리
- 각종 서체 완비
- 컴퓨터가 내장된 수동사식 연결



- 컴퓨터사진식자 · 수동사진식자
- 광고 기획 · 편집 · 제작 대행

經濟學叢書

經濟學原論

신국판 · 양장 / 702면 / 값 8,000원

福岡正夫 原著 丁炳然 解譯

[經濟原論]書는, 一般人에게는 경제의 기본틀을 명쾌하게 설명해줄 수 있어야 하고, 經濟學徒에게는 경제학의 전내용을 체계적으로 제시, 연구의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 이 책은 살아있는 경제현상을 일관된 체계하에서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比峰出版社

서울시 종로구 신당동 292-46, 전화 234-3365·3378

글/더/잘쓰기/총서

- ① 글의 비밀
金炳元/3,500원

- ② 논픽션 쓰는 법
헤이즈 B. 제이콥스/金炳元역/4,000원

- ③ 소설의 방법과 인식
伊藤整/李基炯역/4,500원

- ④ 추리소설 쓰는 법
미국추리소설작가협회/高廷基역/4,500원

- ⑤ 동화 쓰는 법
리 와인담/李相琴역/4,500원

- ⑥ 그림책 쓰는 법
엘렌 E. M. 로버츠/金正역/5,000원

- ⑦ 주부작가로서 성공하는 법
엘렌 F. 심버그/高廷基역/4,000원

普成社 서울·마포구 신수동 445-5
출판단지내 719-0784